

주 최 **K**·)) internet



[발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법안 실효성 검토 (ISP /OSP 의무를 중심으로)

최 민 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디끼털 정학취 범꾀 방끼 법안

실효성 검토

(ISP/OSP 익무를 중심으로)

2020. 4. 28

최민식(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u>목</u> 자
I 개요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대책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방안 검토
2

Π

개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 확대)

- ◆ 최근 익명성을 강조하는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기반으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악질적인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발생
- ◆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 역려와 공부 초래
- ◆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 마련· 추진해왔으나, ICT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 대응 한계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09.26) why?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 등 불법촬영 범죄 확대
 - ▷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2019.1.24) why? '양진호 사건'으로 웹하드 · 필터링 · 디지털 장의업체 간 카르텔 확인
- ◆ 최근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화로 대규모 범죄수익 창출(가상화폐 등 활용)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4.23,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88

3



개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 변화 상황)

	기존 상황		최근 상황
디지털 성착취물 범위	(촬영물) · 변형카메라 등 <u>불법촬영물 영상</u>		(다양화) + <u>합성ㆍ편집물</u> (딥페이크 등) + 강요 등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촬영ㆍ제공한 <u>성착취물</u>
유통매체	(<u>답웹/Deep Web</u>) · P2P, 웹하드 등 유포, 불특정 다수 확산	⇨	(폐쇄적/Dark Web) · 해외 서버 기반 <u>폐쇄적 SNS</u> 활용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빠르게 이동
가해자	(<u>소규모 집단 범최</u>) · 개인 등 소규모 집단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 공유		(<u>조직적 범죄</u>) · 계작, 자금전달, 운영 등 <u>역할분담</u> · 가입자(<u>유료회원</u>), <u>가상화폐</u> 등 활용 통해 대규모 범죄수익 창출
피해자	(<u>피해자 불특정</u>) ·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에서 불법촬영 노출		(피해자 특정, 피해수준 심화) · 특정 피해자 대상 협박, 강요, 지속적 성착취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4.23, 2면 표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일부 수정.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88

개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처리 현황)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범죄 처리 현황]

										저	리								
各五	사건			구근	양판							불기소				기타			12.5
접수 저분 (신수) 계 구속 불구 계 구약	연호	약식	현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 권없 음	각하	,	4	기소 중지	기타	,	4						
2015	1,004	996	8	46	54	5.4%	29	2.9%	36	428	0	2	2	468	47.0%	20	425	445	44.7%
2016	1,341	1,356	33	66	99	7,3%	31	2.3%	39	549	1	11	1	601	44.3%	21	604	625	46.1%
2017	640	647	32	40	72	11.1%	29	4.5%	34	224	1	4	1	264	40.8%	32	250	282	43.6%
2018	991	916	48	57	105	11.5%	60	6.6%	39	195	1	5	1	241	26.3%	62	448	510	55,7%
계	3,976	3,915	121	209	330	8.4%	149	3.8%	148	1,396	3	22	5	1574	40.2%	135	1,727	1862	47.6%

출저 : 범무부

출처 : 허진무·심윤지 기자, "n번방 성착취물 본 유료 회원들도 "성폭력 공범 처벌 가능", 경향신문, 2020.03.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222216025



III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대책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1. 처벌 실효성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양형기준 마련, 범죄수익 환수 강화, 신상공 개확대등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잠입수사 도입,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등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피해자로 규정,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4.23.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ld=156386988

III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대책 (인터넷 사업자 책임 강화)

- ◆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발견시 바로 삭제
- ◆ 모든 인터넷 사업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
- ◆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
-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에 해외사업자 대상 역외적용 규정 도입

	현행
유통방지	·웹하드, P2P사업자
기술적 조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삭제 대상	불법촬영물
제재수단	·과태료부과(2천만원 이하)

	대책
7	· 모든 인터넷 사업자 대상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	·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 (불법촬영물+불법편집물+이동 · 청소년성착취물)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출처: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4.23. 8면 표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일부 수정.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88

7

III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대책 (대책 마련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 선
대책의 범위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처벌기준 (법정형)	▶범죄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 美 10년이하 vs 韓 1년이하 징역)	›제작행위공소시효폐지,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
형집행 (수사 및 처벌)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 구형 · 선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 매체 활용 사전적발 곤란	›검찰 구형기준, 법원 양형기준 마련으로 법정형 수준 처벌 가능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도입 범행 초 적발, 수사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 피의자 취급, 구제 공백 발생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보호 공백	▸아동청소년 '피해자' 명시 보호 대상 명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세 미만→16세 미만)
처벌사각지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맞물려 새로운 범죄수법 출현 으로 처벌공백 발생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구매행위 처벌, 온라인 그 루밍 처벌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범죄수익환수	›범죄수익 은닉, 범인 해외도피, 범죄수익 특정 곤란시 수익환수 곤란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규정 신설, 추징 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봉쇄 등
피해자 보호	▶신속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유발	▶24시간 원스톱 지원, 先삭제, 後심의 도입, 주민 번호 신속변경(3월→3주) 등 피해자보호 강화
인식	•오프라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 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범죄 라는 인식 형성

출처: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4.23. 9면 표 〈대책마련 전후 비교〉일부 수정.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88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20대국회 2020년 발의안/4.27.기준)

발의안명	제안일	제안자	주요 내용	비고(벌칙 등)
정보통신망법	2020-03-23	백혜련의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발견·삭제·전송방지·중단 기술적조치 의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020-03-23	백혜련의원	성적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 특수협박죄, 강요죄 처벌, 상습범 가중 처벌	7년/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처벌법	2020-03-23	백혜련의원	신체 촬영물 유포 처벌, 다운로드 받은 자 처벌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처벌법	2020-03-25	송희겅의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발견·삭제·전송방지·중단 기술적조치 의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020-03-25	송희경의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형량 상향, 구입 소지자 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2020-03-31	박광온의원	역외적용, 국내대리인 지정,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ISP 기술적·관리적 조치, 손해배상	과징금, 3배배상, 불법정보시정요구 생략
성폭력범죄처벌법	2020-03-31	박광온의원	불법촬영물 협박 강요죄, 소지 시청죄, 범죄이익 몰수 신고자 포상금 등	3년 이상 유기 또는 무기징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020-04-09	박대출의원	폭력 협박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비영리, 관람 접근자 처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2020-04-09	박대출의원	성착취물 제작 소지 유포자도 범죄단체 등 조직 간주	범죄단체 조직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020-04-20	백혜련의원	영리/비영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배포 전시 등 처벌 상향	5년/3년 이상 징역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2020-04-21	한정애의원	불법촬영물 반포상영죄 상습범 가중처벌, 성폭력범죄 예비음모죄 처벌	처벌시 ½ 가중, 3년 이하 징역
범죄수익은닉처벌법	2020-04-21	한정애의원	유죄 재판 하지않거나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 갖추었을 때 선고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형법	2020-04-21	한정애의원	미성년자 간음 추행죄 대상 연령 16세, 강간죄 등 예비 음모죄 신설 등	연령 상향, 경합범 비례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020-04-21	한정애의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예비음모죄 신설, 공개명령 대 상, 신고포상금 지급	법명 변경, 처벌 강화(7년 이상 유기 등)
범죄수익은닉처벌법	2020-04-24	송기헌의원	[돌입골문 추정 선열	온라인 성착취영상물 입증 책임 완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020-04-24	정춘숙의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 소개 처벌, 신고포상금 지급	광고·소개 행위 처벌 신설

9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OSP/ISP 의무 검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24819, 백혜련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
	른 촬영물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의3(벌칙) 제44조의7제1항제10호에 따른 촬영
	물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u>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u>
	한다.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OSP/ISP 의무 검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안) 검토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인용

안 제70조의3(벌칙) 제44조의7제1항제10호에 따른 촬영물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터넷상 불법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통위 또는 방통심의위 등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함
- ➤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할 능력이 나 권한이 없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SP)에게 법적 의무 부과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유통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1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참고 : 기술적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시행령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 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 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 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 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 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록 하는 조치 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제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ㆍ청 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 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참고 :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 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13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OSP/ISP 의무 검토)

「성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24825, 송희경의원안)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
	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발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u>인 조치</u> 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
	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
	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
	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고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OSP/ISP 의무 검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를 말한

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5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명	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경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 5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통신서비스 제공자 를 말한다.
하는 자로서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
	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와 영리를 목
	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
	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
	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 '
	무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
_	및 부가통신사업 으로 구분한다.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OSP/ISP 의무 검토)

「성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안) 검토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인용

- 안 제14조의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 발견 위한 조치, 즉시 삭제, 전송 방지, 중단 기술적 조치** 아니한 OSP 처벌. 다만, OSP가 불법촬영물등 발견 위한 상당 주의, 전송 방지 중단 시도 기술적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
- 인터넷상 불법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통위 또는 방통심의위 등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함
- ➤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SP)에게 법적 의무 부과
-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 물 유통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OSP/ISP 의무 검토)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24829, 박광온의원안) 검토

현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	
는 아니 된다.	
<u>〈신 설〉</u>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u>또는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하다)</u>
<u>〈신 설〉</u>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방
	<u>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u>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신 설〉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제64조의5(과징금의 부과 등)

Ⅲ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OSP/ISP 의무 검토)

- ▶ 박광온의원안 제44조의7제10호에서 인터넷상 불법정보는 같은 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통위 또는 방통심의위 등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함
- >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할 능력 이나 권한이 없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SP)에게 법적 의무 부과
- 안 제44조의7 제5항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 등이 없어 수범자가 취해야할 조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음
- 안 제44조의7 제6항에 따라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SP)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
-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유통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IIII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법안 종합 검토)

◆ 불가능한 의무강제

- 대부분 SNS의 대화내용은 종단간 암호화, 서버에도 암호화 상태로 저장되므로 사업자가 대화내용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조치(필터링 기술) 적용 불가함
- 전면적인 기술적조치 시행시 이용자 통신을 아무 권한 없는 사업자가 감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사적 검열이 될 것임

◆ 수범 대상 오인 혼동 및 확대

- 개정안들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발생가능성이 높은 "특정 당사자에게 폐쇄적으로 제공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매개하는 국외 비 신고사업자인 텔레그램 등은 수범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관리 가능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임
- 웹하드, P2P 서비스는 저작물 유통 등이 주요 서비스인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기술적 조치를 일반적 부가통신사업자에 확대는 민간에 책임 전가

◆ 중복규제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ISP에게 불법촬영물 등 불법정보 유통 금지가 중복 규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 규정은 타당성 결여

19

▼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방안 검토 (기술적조치:필터링기술)

			파일 왜곡돼도 불법콘텐츠 필터링 가능
	해시값 필터링	각각의 파일에 고유값(해시값) 설정 후 이와 똑같은 해시값 가진 파일을 불법영상물로 판단해 차단	파일 형식, 해상도 등 변형시켜 우회 가능
	금칙어 설정	특정 단어 검색 못하도록 차단	게시글 제목 변경하면 무용지물
기술 수준	필터링 방식	적용 원리	특징

출처 : 박주희 기자, '무한도전' 불법유통 안 되고 '몰카영상'은 되는 까닭은?, 한국일보, 2018.12.01. 그림 참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81562074558?did=DA&dtype=&dtypecode=&prnewsid=

◆ 2019,2,19,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사건(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

- "경쟁업체에서 더 편한 기술을 갖췄거나 활발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는 이유 만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를 강제할 경우 온라인서비스 규모나 경쟁력 등 고려하지 않고 가장 발진된 효율적 시스템을 모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관련 시장에 새롭게 참여 하는 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특허로 경쟁업체의 기술을 임의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출처 : 한광범 기자, '법원 "카카오, 음란물 차단 조치 미홉"…이석우 前대표는 '무죄', 이데일리, 2019.2.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ld=03575206622392160&mediaCodeNo=257&OutLnkChk=Y

Ⅳ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방안 검토 (기술적조치:필터링기술)

- 2007.5.23., 머니투데이, "인터넷 음란동영상 거르는 기술 개발", "정통부-ETRI, 멀티미디어콘텐츠 판별시스템 개발, 인터넷에서 음란물같은 불법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
- 2012.3.16., 한겨레신문, "'야동' 꼼짝마···피부색·신음소리 식별해 자동차단", "정부는 전자통신연구원(ETRI) 이 개발을 앞둔 음란물 분석·차단 기술을 그린아이넷의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는 계획. 이 기술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동영상에서 신체 특정부위나 피부색, 신음소리 등을 식별해 음란물 여부를 판단"
- 2018.10.28., 전자신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해미디어 검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 신연구원(ETRI)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이용해 이미지, 동영상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에도 적용 가능한 음란물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
- 2020.3.26., 뉴스토마토, "AI로 불법촬영물 갑자"…기술 개발 총력전", 과기정통부·여가부·한국전자통신연구 원(ETRI)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 미지를 추출해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해 수집. **시스템이 영상물 수집** 하면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피해촬영물이라고 확인되면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

21

▼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방안 검토 (미국사례)

◆ 미국연방기구 조치

- 2001년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공립학교 및 도서관에 인터넷 접속 차단,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조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비동의 성적 영상 올리는 사이트에 대한 시정 조치

◆ 민간단체의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 디지털 성폭력 근절 비영리 단체인 사이버인권보호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s, CCRI)는 CCRI는 비동의 영상물을 발견한 누구나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삭제 가이드라인(Online Removal Guide)' 제공
- 비동의 성착취물 지원단체 BADASS(Battle Against Demeaning & Abusive Selfie Sharing)는 비동의 성착취물, 사이버불링, 스토킹,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지원, 교육, 입법 활동

출처 : 김예원, '미국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9-2호(통권 제19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12, 25-26명

■ 다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방안 검토 (영국사례)

◆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 제67조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사적 행위에 대한 이미지를 기록하는 행위 처벌
- ◆ 「관음행위처벌법(Voyeurism (Offences) Act) 2019」
- 제67조A항에서 성기, 엉덩이 또는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가해할 의도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관찰이나 촬영 등 행위 최대 2년 징역형
- ◆ 민간단체의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Revenge Porno Helpline)은 웹사이트와 SNS에서 온라인 이미지와 동영상 제거 위한 '페이스북 파일럿(Facebook Pilot)'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 삭제
- 이미지 기반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SPITE
 (Sharing and Publishing Images to Embarrass) 프로젝트를 런던 퀸메리 대학과 공동 진행

출처 : 김슬기,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최근 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19-2호(통권 제19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12, 30-35면.

23

IV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방안 검토 (개선방향)

▶ 법제 개선

-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용어와 정의, 처벌기준, 행위양태, 이득 차단 등 대상 구체화
- 여러 법안에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규정 입법 중복 해소를 위해 국회 및 정부 법제 양산이 아닌 효율성 있고 정확한 법안 마련

> 우리나라 법령에 따른 적극적 법집행과 국제공조

-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규제에 대해 글로벌기업 우회 또는 회피하는 경우 우리 정부와 사법기관의 행정적·사법적 집행력 강화
- 소위 'n번방' 사건의 글로벌사업자인 텔레그램은 사업장 소재지 변경, 서버 위치 확인 불가능, 국내 지사 및 대리인 부재 등으로 법집행 어려우므로 관련 국제기구, 해당 국가 정부와 공조

사업자 자율규제와 공적 영역 협력 및 교육

- 미국, 영국 등은 사업자 자율규제와 비영리단체 역할 강화
- 사업자, 국회, 정부, 사법부 등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협력 체계 조직 및 지원
- 미디어 리터러시 등 행위자 준법의식 강화 교육

감사합니다

olfacio@khu.ac.kr



토 론

정 진 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번방 방지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문

최근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공유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잘못된 성문화와 범죄행위를 즐기는 사회분위기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분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의 제·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문제의 핵심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

n번방의 문제는 위계와 협박으로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문화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범죄 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논의되는 ISP에 대한 규제는 n번방의 책임을 범죄자가 아닌 ISP에 초점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희석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까지 규제범위를 넓히는 것이 옳은가?

n번방 방지법은 저작권법의 OSP의 책임제한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ISP 등은 저작권법의 OSP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인터넷의 자유를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자권법의 OSP 책임제한 규정은 웹하드 등 하드웨어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현재의 법안들은 인터넷에서 일시적으로 돌아다니는 콘텐츠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제범위의 확장은 인터넷의 모든 정보에 대한 검열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빅브라더'라는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업로된 정보 외의 통신정보에 대한 검열은 정보통신망의 처리속도를 지연시킨다는 문제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타 법과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성'착취'물에 대한 필터링은 가능한 것인가?

저작권법의 OSP 책임제한 규정은 '불법'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때 저작물이 불법 인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대상이 존재합니다. 즉, '적법'인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인지를 비교하여 찾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제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웹하드에 업로드된 저작물의 제호가 영화제목인지 등을 비교하고, 영화라는 비교대상과 동일한 것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착취'물에서 중요한 요건은 '착취'라는 주관적 요소가 있는지에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역시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인 콘텐츠일지라도 그것이 '불법' 촬영된 것인지, 타인의 성을 '착취'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ISP에 대한 형사벌은 타당한가?

저작권법의 OSP 책임제한 규정은 필터링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때 저작권 침해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닙니다. OSP가 방조책임을 지는 지를 더 판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OSP가 본의 아니게 방조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면 방조책임을 제한하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안된 n번방 방지법은 기존의 과태료 부과를 넘어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ISP에게 사실상 방조책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5. 대안의 제시

OSP나 ISP는 n번방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 n번방 사건이 인지된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증거를 보존하고, 이를 통해 n번방 사건의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처벌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n번방을 바로 삭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를 정리하면, ISP는 1)제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 스스로의 인지 등에 의해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등이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2)수사 및 처벌에 필요한 증거로서 성착취물과 유통자,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3)정보보존 후수사기관과의 협조로 n번방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있습니다.

끝으로, ISP는 n번방 사건의 방조범이라는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수사와 증거보존, 그리고 처벌의 파트너라는 점에서 입법안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

김 현 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n번방,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문

- 1. 우선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 원인으로
- ㅇ 첫째, 지나치게 낮은 형벌로 인한 법의 위하력 상실이라고 볼 수 있음
 - 2011년부터 5년간 서울 5개 법원에서 불법 촬영과 유포,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1천 800 여 건 중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5%에 불과.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으로 입건된 성범죄자는 평균 2년의 징역형을 받았음. 소라넷은 1999년 이후 17년간 각종 불법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지만 2016년 사이트가 폐쇄될 때 처벌받은 건 운영자 징역 4년 이 전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 27일 출소
 - 미국의 경우 아동음란물 제작은 15-30년, 상업적 유통은 5-2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초범이라고 예외는 없음 손정우의 사이트 회원인 미국인은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을 받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한 40대 역시 징역 15년형을 받았음. 영국에서도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자에게 22년형을 선고한 바 있음

ㅇ 다음으로 국제공조 역량의 미흡

- 해외 플랫폼에서 범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온전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사법공조가 필수적. 지금까지 외국 사법기관의 인지로 국내 사법당국에 협력을 요청한 사안이 대부분이 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지, 검거한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음
- → 4월 2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의하면 법정형량 상향, 양 형기준 마련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됨
- 2. 반면 OSP책임강화 대책은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고민 필요
- 법은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규범적 효력을 발휘하여 입법자가 의도한 구실을 수 있음(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

- 타당성은 국민이 그 법을 정당하다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같은 경우를 의미
- 실효성은 법이 현실로 지켜져서 실현되는 근거, 즉 법이 법으로 인정받고 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재가 가해짐으로써 그 법의 존재의의가 나타나 있는 상태 → "지금실제 지켜질 수 있는가?
 - i)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법은 정당하나 어떤 이유에 의하여 강행되지 않음으로써 법위반의 상황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 국민이 법을 경시하여 법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음
 - ii) 타당성은 없으나 실효성만 있는 경우 : 법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국 민의 저항을 받아 개정 또는 폐지
- o 현재 국회 제안된 OSP관련 법안은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OSP에게 일정부분 모니터링 등 각종 의무를 부여이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OSP의 감청 가능성, OSP의 사법집행자로서의 기능 전가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타당성'에 대한 신중을 고려할 필요
- ㅇ 한편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법안의 내용은 대폭 수정 필요

〈방심위의 先삭제, 後심의 절차 도입의 실효성〉

- 우선 4월 2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
-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는 OSP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삭제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즉 심의위가 텔레그램의 대화방에 디지털성범죄물이 올라와 있다는 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직접 텔레그램의 대화방 정보를 삭제할 수 없음, 설사 심의 전에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라 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의문
- 국내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의 시정조치 요구에 즉시 삭제조치 하나(법의 집행력),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집행의 곤란함으로 접속차단 수준에서 협조하며 그러한 협조도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선삭제/후심의 제도의 실효성 의문, 이번 사태에서도 텔레그램의 수사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불문

〈 OSP책임강화 규정의 실효성〉

- 제안된 OPS책임강화 법안은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자에게 적용 곤란하나 지금까지 대규모 디지털성범죄의 근거는 해외사업자(다크웹 사건, n번방 사건)이므로, 결국 그 실효성 의문
- 서버와 담당자 연락처조차 모르는 텔레그램에게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게 가능하겠는가. 본사의 위치도 불명확한 텔레그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책임 불이행에 따른 형벌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 기존 이와 유사한 규제를 시행했을 경우의 경험치에서 보듯 법률의 의도와 효과는 고사하고 대부분의 중소 사업자는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서, 국내 산업만 타격을 받는 양상을 보일 것임
- 웹하드, P2P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로 웹하드 업체는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국내 P2P사업 역시 그 P2P 본연의 서비스는 쇠퇴 차라리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비협조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민적 거부·불이용 캠페인을 통 해 사법협조를 압박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 방안일 수 있음

3. 행정상 제도개선 수반 필수

- O 금번 대책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기간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를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본질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
- O 아직까지도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개인정보의 키값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수 정이 필요 : 주민등록번호체계 개편, 이용범위 제한(현재 주민등록번호 이용 법정주의 개선) 등
 - ⇒ 결국 문제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그 여파는 국내에서 심각한데 대책의 실효성은 의문, 법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국민이 법을 경시하여 법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게 됨



토론

김 가 연 (오픈넷 변호사)

n 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n 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1. 불법촬영물 정의의 문제점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¹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이의 복제물이 불법촬영물이며, 불법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음. 현재 발의된 n 번방 방지 법안들은 이러한 불법촬영물의 정의에 근거하고 있음.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²,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데, 만약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됨

2. 플랫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신설 법안의 문제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201

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 1 항의 촬영이 <u>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u>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² 대법원 형사 2 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길에서 본 여성 A(23)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스마트폰으로 A 씨의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 도 16851).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 1 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 번방 방지 법안 중 다수가 청소년성보호법 제 17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유사하게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플랫폼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지우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해서는 2011. 9. 15.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고, 2015. 4. 1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음.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도 존재함.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있는데도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n 번방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함

정보통신망법 백혜련 의원안

성폭력처벌법 송희경 의원안

정보통신망법 박광온 의원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 조에 따른 촬영물

제 70 조의 3(벌칙) 제 44 조의 7 제 1 항 제 10 호에 따른 촬영물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4 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제 14 조의 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제 44 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에서 제 14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8 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제 14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 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할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 즉 모니터링 의무를 지운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됨.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상 오가는 통신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 대화방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음.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같이 영세한 곳은 플랫폼 사업을 포기해야할 것임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물만 100% 골라내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에 의한 필터링이나 동영상 해시값 기반 필터링인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함. 해시값 기반 필터링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1 차로 걸러낸 영상을 인간이 육안으로 보고 성범죄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동영상의 해시값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데,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영상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Al 기술도 완벽하지 않아서 합법적 성인물인지 디지털 성범죄물인지는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함.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음란물이 공유되었다는 이유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청소년성보호법 제 17 조 위반으로 기소당했으나 1 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기술적 조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줌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 해도 집행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해외 플랫폼의 이용을 막는 것은 중국처럼 만리방화벽을 쌓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플랫폼의 합법적인 이용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됨.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사 및 사법공조가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음

결론적으로 실효성 없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모니터링 의무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바로 차단·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의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3. 불법촬영물 소지죄 신설 법안의 문제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중 일부는 불법촬영물과 복제물 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4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도입된다면 한국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첫 국가가 될 것임.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실제 살인행위나 강간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인 소위 스너프 필름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나 강간행위 등 실제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처벌되지만 영상을 소지했다고 처벌받는 소지죄는 존재하지 않음.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불법 촬영물의 개념이 촬영과 배포의 전후 정황을 모르고 범하게 되는 소지행위에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연출된 영상과 진짜 범죄영상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하며, 성행위와 촬영이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후 유출만 의사에 반하게 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따라서 소지의 처벌은 촬영된 행위가 범죄행위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 사정을 소지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또한 고발 및 수사 목적의 소지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의 형량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보다 높아서는 안될 것임

성폭력처벌법 백혜련 의원안	성폭력처벌법 송희경 의원안	성폭력처벌법 박광온 의원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거나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론

구 태 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N번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토론문

1. 성착취물 모니터링 법안은 공공의 실패를 또 다른 실패로 덮으려는 것

□ 공공의 실패

- N번방 등 성착취물 제작유통범죄에 대해 경찰이 지속적인 공개수사를 통해 범죄예방을 계속해 왔다면 26만명의 성착취물 공유회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특히 10대들도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은 국가의 대응 실패를 보여줌
- N번방 사건 보도 이후에는 경찰이 주범들을 계속 검거하고 있는데, 이는 텔레그램 사용에 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검거할 수 있었음을 보여줌
- 2000년대 초반에도 아동포르노 공유카페가 있었고, 소라넷 등 지속적인 성착취물 공유가 있어 왔으나, 달라진 것은 해외 메신저를 주요 배포 수단으로 쓰는 상황이 전개되는 외중에 경찰이 이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원인

□ 국내 플랫폼의 불합리한 역차별로 인한 국가데이터(컨텐츠, 이용자 개인정보) 및 국부의 해외 유출 초래

- 이번 개정안은 마약유통에 우편물이 늘어나자 배송 관련 업체들에게 모니터링의무를 부과 하고 이들이 이를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식의 발상임
-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면 범죄자들은 해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런 플랫폼 서비스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므로 그 서비스를 차단할 수도 없어 결국 국가법체계의 경시풍조만 부추기고 국내 플랫폼에 역차별을 강화해 이용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 나가는 썰물효과를 불러 일으켜 이용자의 국가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됨
-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댓글실명제법이 유튜브의 국내지배를 초래하고(결국 위헌결정됨), 정통망법의 명예훼손 임시조치의무가 악플을 막지 못하고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 되고 있는 것도 플랫폼에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법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실 증사례임

□ 불가피하지 않은 민민감시 의무부여는 위헌

• 이는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신고에 관한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법체계와 충돌하며, 타인의 범죄를 예방할 의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가 할 일은 민간에게 떠 넘기고, 민간(사업자)이 민간(이용자)을 감시하게 하는 민민감시 법안으로 불가피한 근거 없이 양심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안임

2. 실효적 대안

□ 제도적 방향 - 국가의 범죄억지력의 강화

- N번방의 실효적 대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범인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임
- 아무리 법정형이 높아도 국가의 범죄억지력이 높지 않으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되므로 범죄는 기승을 부리게 됨
-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모두 과속을 하지 않는 것처럼 검거율이 100%일 때 범죄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이치이므로 국가의 실효적인 범죄억지력을 높여주는 것이 어설픈 플랫폼사업자의 의무부여라는 투망식 규제보다 훨씬 효과적임

□ 대안

-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감청허용(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개정 대상 범죄에 추가)
 - 현재는 감청불가이므로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 통신결과물의 실시간 추적에 한계가 있고, 국내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잠입수사(Undercover investigation)의 법제화 및 증거능력 부여
 -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발생 후 검거보다도 사전예방이 국가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므로 범죄의사를 갖고 있는 예비범죄자들에게 경찰이 접근하여 범의를 확인후 '미수범'으로 검거하거나 범행 이후에도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잠입수사의 법제화가 바람직

- 형사소송법에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 결과물은 법정에서 증 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 도입 필요
- 잠입수사 등 과정은 공개하여 사후 약방문 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국가정책 지속
 - 잠입수사의 과정과 사후결과를 공개하여 범죄자들이 인터넷에서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사전 예방적 국가 정책 수립과 지속이 필수적

3. 보론

- □ N번방 사건은 행정질서 문란 사건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마련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이므로 행정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나서서 효과적인 범죄 예방정책을 선도해야 할 영역임
- □ 이런 인터넷 역기능이 발생하면 항상 행정부처가 나서서 국민의 경제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고 부처 권한을 키우는 계기로 삼고 있는데 실효적 인 대안을 내 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결국 플랫폼경제에 역행하는 결과만 양산해 왔음



토 론

박 성 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검토의견

□ 실현 불가능한 의무강제 문제

- 대부분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대화내용은 종단간 암호화되고, 서버에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가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터링 기술의 적용도 불가능함
- 텔레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 의무는 국가가 민간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는 문제가 있음

□ 규제 대상의 오인으로 인한 법개정 취지 몰각

-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를 일부 수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 부가통신사업자 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대상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 동일함
- 그러나, 이번 사건의 발단인 텔레그램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실도 없고 향후에도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n번방 사태의 재발방지'라는 법개정 이유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동일함
- 그러나,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태의 본질은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특정 당사자에게 폐쇄적으로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여서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명백히 오인한 문제가 있음

□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반화 문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저작물 등의 유통을 주목 적으로 하는 웹하드 서비스를 의미함

- 현재 등록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는 약 54개(17년 11월 기준)에 불과한 반면, 신고 된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는 약 15,000개(19년 12월 기준)에 이르는 상황
- 웹하드와 같은 특수목적 온라인 서비스와 일반 온라인 서비스를 동일시하여 규제방식을 통일하겠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관련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 문제

- 현재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는 소수 의 특수목적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고, 그 실효성에 있어 제안이유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었음
- 위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전체 국민들이 사용하는 일상적 서비스에 적용되었을 때 정 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웹하드 등록제 도입 이후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개시 및 등록유지를 위한 조 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실효적인지도 의문임
- 한편, 개정안은 제22조의5 제1항을 기존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 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식한 경우"로 수정하여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의 판단을 사업자에 게 전가하는 문제도 있음

□ 통신의 비밀 침해 문제

-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가통신사업자 전체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이용자의 게시물, 대화내용 등에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통신이 서비스 사 업자의 감시 이래 놓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이용자 개인의 기본권(통신의 비밀)이 침해될 문제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강제수사권 또는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특히 예비·음모 행위에 대해서) 사적 영역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민사소송, 형사고소·고발에 직면할 위험이 있음

■ 즉, 불법촬영물인지 판단의 문제를 떠나 이용자의 사적 영상의 차단으로 인한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위반여부가 문제될수 있고, 자신의 통신이 사업자의 검열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용자가 해외의 유사서비스로 이탈되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

□ 평등권 침해 문제

- 기술적 조치의무 적용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경우, 현재까지의 입법 관행으로 볼 때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가 상당한 사업자들은 이미 전담 모니터링 인력 운용 및 자체 솔루션을 통한 자율규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의 실효 성도 의문이고, 반면에 기술적 조치의무 적용 비대상 서비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문제도 있음
-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가 상당한 사업자들의 서비스에서만 디지털 성범죄물의 복제·전송 등 유포행위가 이뤄진다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수범자를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 없이 관련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문제가 있음
- 역외적용 규정도 법집행력이라는 측면에서 역외에 있는 해외사업자에 비하여 국내사업자에 게만 엄격히 적용되어 실질적인 차별 규제를 야기하여 형평,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국내사업자 규제강화 문제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위한 역외규정 도입의 경우, 국내에 사무소가 없거나 서비스와 관련한 인프라가 전혀 없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것일지 의문임. 정부의 의도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해외서비스로의 이탈이 늘어날 우려도 존재함
- 한편, 부가통신서비스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의 혁신과 창의적 서비스의 개발은 불가능하고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로 퇴보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임

□ 공정한 경쟁환경 저해

• 영세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필터링 기술 도입 등 그 인적·물적 비용으로 인하여 시장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을 야기하여 시장의 독과점 또는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중복규제 문제

-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다수 존재함
- 개정안은 위와 같이 중복된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교육, 홍보, 계몽에 더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국민의 신고, 고발, 고소 등에 따라 국가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근절대책은 위와 같이 현존하는 규제를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 안을 찾는 것이 우선임











